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두고, 보험약관안과 보험요율안에 대한 변경이 예정된 경우 공고하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이 개정(법률 제19284호, 2023. 3. 28. 공포, 2023. 9. 29. 시행)됨에 따라,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

손해평가인력의 전문성을 보험 인수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 위탁 업무범위 제한을 해제하고, 과태료 부과기준 가중 감경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경우: 농업인안전보험”을 “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

나.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

다.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

라. 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

제4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

나. 어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

제4조제1항제2호다목(중전의 나목) 중 “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”를 “재해보상보험분과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, 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또는”을 “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,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,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, 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,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, 어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,”로, “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”를 “재해보상보험분과위원회”로, “따른 사항”을 “따른 사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,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,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

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(중전의 제1호) 중 “농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:”를 “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: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: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
2.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: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임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
3.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: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사항
5.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: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변경사항의 공고)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
2. 보험상품의 변경으로 보험료율이 기존보다 높게 산출될 경우
3. 보험상품이 폐지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변경 전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재해보험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변경 전 의견수렴을 시행하는 경우,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재해보험사업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4호 중 “비영리법인(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”을 “비영리법인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4호 중 “보험요율산출기관”을 “보험료율산출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2의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(제12조의4 관련)

구분	과목
1. 제1차 시험	가. 「상법」 보험편 나. 농어업재해보험법령(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, 「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」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을 말한다) 다.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
2. 제2차 시험	가.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나.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

별표 3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해당 법 조문	과태료 금액		
		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가.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	법 제32조제1항	500 만원	750 만원	1,000 만원
나.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경우	법 제32조제3항제1호	250 만원	350 만원	500 만원
다.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97조제1항 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	법 제32조제3항제2호	250 만원	350 만원	500 만원
라.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, 설립위원, 임원, 집행간부, 일반간부직원,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법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32조제2항제1호	250 만원	350 만원	500 만원
마.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, 설립위원, 임원, 집행간부, 일반간부직원,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법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131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32조제2항제2호	250 만원	350 만원	500 만원
바.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, 설립위원, 임원, 집행간부, 일반간부직원,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법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32조제2항제3호	150 만원	200 만원	300 만원
사.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32조제3항제3호	150 만원	200 만원	300 만원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분과위원회) ① 법 제3조제 6항에 따라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둔다.	제4조(분과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
1. 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 험심의회(이하 “농업재해보험 심의회”라 한다)의 <u>경우: 농업 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</u>	1. ----- ----- ----- <u>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-----</u>
<u><신 설></u>	<u>가.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 회</u>
<u><신 설></u>	<u>나.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 회</u>
<u><신 설></u>	<u>다.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</u>
<u><신 설></u>	<u>라. 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 회</u>
2. 법 제3조에 따른 어업재해보 험심의회(이하 “어업재해보험 심의회”라 한다)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분과위원회	2. ----- ----- ----- -----
<u>가. 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 회</u>	<u>가.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 위원회</u>
<u><신 설></u>	<u>나. 어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 회</u>
<u>나.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분과위원회</u>	<u>다. ----- 재해보상 보험분과위원회</u>
② 제1항에 따른 <u>농업인안전보 험 분과위원회, 어업인안전보험</u>	② ----- <u>농작물재해보 험분과위원회, 임산물재해보험</u>

분과위원회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(이하 “분과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·조정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보고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1. 농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: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 5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2. 3. (생략)

분과위원회,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, 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,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, 어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, --- 재해보상보험분과위원회--- 따른 사항-----

1.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: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

2.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: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임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

3.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: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사항

4. 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: ---

5.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: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

6. 7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
③ ~ ⑥ (생 략)

<신 설>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변경사항의 공고) ①

법 제9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
2. 보험상품의 변경으로 보험료율이 기존보다 높게 산출될 경우
3. 보험상품이 폐지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변경 전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재해보험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변경 전 의견수렴을 시행하는 경우,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

제13조(업무 위탁) 법 제14조에서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
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~ 3. (생략)
4.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
수행할 목적으로 「민법」 제
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
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
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
인(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
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제21조(통계의 수집·관리 등에
관한 업무의 위탁) ① 농림축산
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
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같
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
통계의 수집·관리, 조사·연구
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
위탁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4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

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해보
험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
있으며, 재해보험사업자는 열람
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
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
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
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업무 위탁)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

----- 비영리법
인

제21조(통계의 수집·관리 등에
관한 업무의 위탁) ①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

사, <u>보험요율산출기관</u> 또는 보 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5. ~ 7. (생 략) ② (생 략)	-- <u>보험료율산출기관</u> ----- ----- 5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26